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Local Self-organization Ordinance Analysis for the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김경란, 윤선예
한국장애인개발원

Kyong-Ran Kim(krkim@koddi.or.kr), Sun-Yae Yoon(audreys2@koddi.or.kr)

요약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 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중심어 : | 장애등급제 폐지 | 지방자치단체 | 장애등급 적용 조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body ordinances applying disability grades according to welfar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are that First, 215 of the total municipalities applied the disability grade, and 1,071 cases were applied to the disability welfare law. Among them, 60.04% (643 cases) of the ordinance that can be divided into severe (1-3 grade) and mild (4-6 grade) were found, and 39.96% (428 cases). A new service eligibility standard that reflects factors such a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nvironment, etc.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since the exemption reduction service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all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other standards within the scope of not decreasing the total service amount when revising the ordin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ew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replace the disability level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 keyword : |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 Local Governments | He Act on the Application of Disability Ratings |

I. 서론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체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 하지만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당사자주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자립생활 모델 관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장애 등 15가지 유형으로 장애를 분류, 각 유형별 1급-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 정책 전반의 시행에 있어 전제가 되어 왔으며, 모든 서비스의 적격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3][4]. 하지만 학계를 비롯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판정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장애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근로능력, 소득활동 능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1][3][5-7].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왔고, 3차에 걸쳐서 시범사업도 진행되었다. 또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70개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방향은 기존의 의학적 판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8].

이러한 추진방향은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어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2조에 의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1-6등급

으로 구분되었던 장애등급제를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제32조의 4에 의거하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서비스별 새로운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9년 7월 1일 이전까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인 중증과 경증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대상이 되는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하여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등급 관련 조례 현황

본 연구는 자치법규 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는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중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한 조례 현황이다.

1.1 사업별 현황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5개가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역자

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19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5개의 지자체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1,07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의 지자체는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복지 사업 분야별로 제정된 조례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감면할인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 ②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및 장애인보호 복지 관련 조례가 상당 부분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의원 지원 관련 조례는 경남, 세종, 충북에서만 제정되어 있었다.

반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들 중 ⑧ 교통비 감면과 ④ 제증명 등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관련 조례들을 제정한 지자체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 공영버스 운영에서 특정 등급의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중증장애인 본인에 한하여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인 교통비 감면에 관한 조례는 전남과 제주, 충남에서만 제정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제증명과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례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 제주시 3개 지역에서만 제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1.2 지자체별 현황

조례에 따른 15개 장애인복지 사업 분류별에 따른 다양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과 경기도가 1위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사업 분야별 조례 제정이 93.3%(15개분야 중14개)로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1위를 차지한 경기의 경우 ⑧ 교통비 감면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충남의 경우 ④ 제증명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서만 장애등급제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다음으로 강원과 서울이 86.7%(13개)로 2위, 경남과 전남 80%(12개) 3위를 차지했으며 4위에는 경북(73.3%, 11개), 5위에는 대전(66.7%,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종시(33.3%)는 전체 15가지 분류[표 1]에서 총 10가지 분야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표 1. 지자체 장애등급적용 조례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 (연회비, 임대료 등 포함)	○	○	○	○	○	○	○	○	○	○	○	○	○	○	○	○	○
②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
③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	○	○	○	×	○	○	○	○	×	○	○	○	×	○	○	○
④ 제증명 등, 사용료 감면 및 면제	×	○	×	×	×	×	×	×	○	×	×	×	×	×	○	×	×
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및 기타	○	○	○	○	○	×	○	×	○	×	×	×	○	×	×	○	×
⑥ 수도 요금 감면	○	○	○	×	×	×	×	×	×	×	×	×	○	×	×	○	○
⑦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	○	○	×	×	×	○	○	×	×	○	×	×	×	○	○
⑧ 교통비 감면	×	×	×	×	×	×	×	×	×	×	×	×	○	×	○	○	×
⑨ 폐기물 관리 수수료 및 과태료 감면	○	○	○	×	×	×	○	×	○	×	×	×	×	×	×	○	○
⑩ 출산 및 보육 지원	○	○	○	○	○	○	○	○	○	×	○	○	○	○	×	○	×
⑪ 장애인 생활 지원 등	○	○	○	○	○	×	○	×	○	×	○	○	○	○	○	○	×
⑫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	○	○	×	○	×	○	○	○	×	×	○	○	×	○	○
⑬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및 장애인고용 등	○	○	○	○	○	○	○	○	○	○	○	○	○	○	○	○	○
⑮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	○	○	○	○	○	○	○	○	○	○	○	○	○	○	○	○
분야별 조례보유비율(%)	86.7	93.3	80	73.3	53.3	53.3	66.7	60	86.7	33.3	53.3	60	80	53.3	60	93.3	60

2. 장애등급제 폐지 선행연구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용득[10]과 이승기[11][12]는 등급제 폐지 시행 시에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승기[12]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등급을 대신할 대안으로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판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감면할인제도의 경우, 장애의 유무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감면할인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소득보장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사업안내를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전체 지자체에서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조한진[6]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선행하여 장애의 재정의를 강조하였으며 장애를 법령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에 따른 기능적 제약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을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운화 외[13]는 감면과 할인서비스 중 9개 서비스에 한정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장애판정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왔다[7][14]. 정중화·이경준[14]은 장애등급 판정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장애판정에 있어 의학적 판단 기준 적용 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와 서비스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참고 정도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옥주[7]의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판정 시 사람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모든 방해 요소를 고려하여,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정서적 건강침해, 사회적 영향,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침해정도를 가중하여 측정하며, 단순 합산이 아닌 상호영향을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독일의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

된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장애등급제 관련 지자체 사업을 조례를 통해 전수조사하였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제공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4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기준을 토대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21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 1,071건을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조례 분석방법으로는 텍스트상의 정성적 자료를 범주화시켜 계량화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15-17]. 최성호 외[16]에 의하면 내용분석은 특정 시대에 따른 특징을 규명할 때 적절한 방법론이며 이는 본 연구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분석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용재 외[18]에서와 박주영[19]의 연구에서도 내용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제정현황 및 비교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장애인복지사업 분야별 분석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일괄 및 예외 조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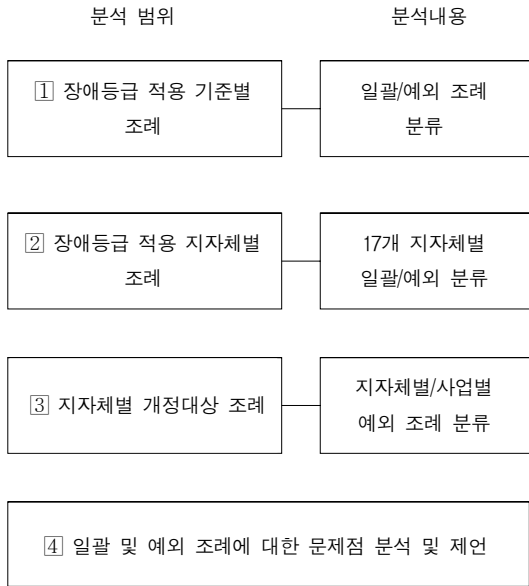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IV. 연구결과

1. 현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5곳에서 제정한 조례가 1,07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 존재한다. 시각장애, 지체장애와 같이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거나 중·경증으로 구분될 수 없고, 지자체마다 등급 내에 상이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일괄 조례와 예외 조례가 사업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조례임에도 다양한 등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적용 범위에 따른 관대성(Esping - Andersen, 1990)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일괄 조례가 예외 조례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례개정 시, 중·경증 이외의 서비스 기준이 필요한 예외 조

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결과 분석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과 경증의 장애정도로 개정이 가능한 조항을 일괄로 구분하였고, 예외 조례의 경우 등급기준이 중증(1급에서 3급)이나 경증(4급에서 6급)으로 일괄 개정대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지자체별 장애등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괄 조례의 경우 전체등록 장애인을 대상(1급-6급)으로 하는 조례가 전체 장애등급 관련 조례 중 24%를 차지하였으며,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대상의 서비스가 36.04%로 나타났다.

일괄 조례에서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대상의 서비스 기준을 적용하여 제정된 조례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적격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적격기준에서 경증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이 용이한 일괄조례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행 의학적 판정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1-3급 기준을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하게 되면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반면 시각장애 4급, 장애1-2급 등 중·경증 외의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는 조례가 전체 장애등급 조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증, 경증과 같이 장애정도의 기준 대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예외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다보니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지자체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해 조례개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

자체는 예외조례 개정 시 무엇보다도 대상자 확대 또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 조례 개정 시, 대상자 확대 또는 축소에 초점을 두 다보면 오히려 사업이나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예산에 따라 대상자를 분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각 서비스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 일괄 조례와 예외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수	비율(%)	
일괄 조례	전체등록장애인	257	24%
	중증(1-3급)	386	36.04%
	경증(4-6급)	0	0
소계	643	60.04%	
예외 조례	428	39.96%	
총합	1,071	100%	

표 3. 각 지자체별 장애 등급 적용 조례 현황

구분	각 지자체별조례		지자체별 총합
	일괄	예외	
경기 (1순위)	89 (8.31%)	70 (6.54%)	159 (14.85%)
경북 (2순위)	69 (6.44%)	43 (4.01%)	112 (10.46%)
전남 (3순위)	64 (5.98%)	47 (4.39%)	111 (10.37%)
경남	60 (5.60%)	30 (2.80%)	90 (8.40%)
서울	56 (5.23%)	34 (3.17%)	90 (8.40%)
전북	47 (4.39%)	37 (3.46%)	84 (7.84%)
충남	48 (4.48%)	28 (2.61%)	76 (7.10%)
강원	27 (2.52%)	44 (4.11%)	71 (6.63%)
인천	36 (3.36%)	24 (2.24%)	60 (5.60%)
충북	24 (2.24%)	26 (2.43%)	50 (4.67%)
광주	20 (1.87%)	10 (0.94%)	30 (2.80%)
대전	23 (2.15%)	7 (0.65%)	30 (2.80%)
제주	28 (2.61%)	3 (0.28%)	31 (2.89%)
대구	17 (1.59%)	6 (0.56%)	23 (2.15%)
부산	14 (1.31%)	9 (0.84%)	23 (2.15%)
울산	17 (1.59%)	6 (0.56%)	23 (2.15%)
세종	4 (0.37%)	4 (0.37%)	8 (0.74%)
총합	643 (60.04%)	428 (39.96%)	1,071 (100%)

[표2][표 3]에서 지자체별 일괄 조례와 예외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장애등급 기준적용 조례 중 1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북

과 전남이 각각 10.46%와 10.37%로 그 뒤를 잇는다. 일괄 및 예외 조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경기도 이어 경북, 전남 순으로 장애등급 조례 수에 따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에서는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면 등(①~⑨)의 조례가 장애등급 적용 조례 1,071건 중 661건을 차지하여 61.7%를 차지하였다. 장애인 복지사업 분야의 대분류로 감면(①~⑨)과 현금지원(⑩~⑪), 편의 및 고용·기타(⑫~⑮)로 나누었을 때 국내의 장애등급 관련 조례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감면 및 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7][12][20].

전체 관련 조례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경기도가 조례 수 1위[표 3]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면 중심의 조례 또한 전체 감면 조례 661건 중 102건(15.4%)을 차지했다. 관련 조례 수2위인 경북 또한 감면 중심의 조례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체 관련 조례 수에서 3위를 차지한 전남을 제치고 전체 관련 조례 수로 7위에 머물렀던 충남이 세 번째로 감면 조례가 많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 사업의 예산편성 시 직접급여보다는 예산규모가 적은 간접급여 형태의 감면할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의 조례에서는 경기, 서울, 전남 순으로 조례 수에 따른 순위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체 장애등급 적용의 조례 수에서는 서울이 5위에 불과하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의 조례는 더 많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조세의 감면 또는 할인을 통한 간접적 혜택보다 직접적 혜택에 더 초점을 둔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의·고용·기타의 경우 장애인콜택시(⑫)나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인력의 채용(⑬), 공공시설 내의 매점설치운영권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이 294건 중 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가 36건, 전남이 3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경증으로 구분될 수 없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이 필요한 예외 조례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전체 장애등급 준용 조례 현황과 유사하게 감면 관련 조례가 예외 조례 428건 중 236건으로 55% 정도를 차지

표 4. 지자체별 조례현황

대분류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
감면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연회비, 임대료 등 포함)	18	38	32	46	10	6	11	9	19	3	7	28	28	29	23	28	15	350
	②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9	33	18	24	1	2	1	2	1	1	2	3	23	16	1	16	12	175
	③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3	7	1	4	0	4	2	1	2	0	5	11	1	0	1	7	2	51
	④ 제증명 등, 사용료 감면 및 면제	0	3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5
	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및 기타	1	3	1	2	1	0	1	0	1	0	0	0	4	0	0	2	0	16
	⑥ 수도 요금 감면	1	15	3	0	0	0	0	0	0	0	0	0	3	0	0	7	3	32
	⑦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1	2	3	1	0	0	0	1	1	0	0	1	0	0	0	1	2	13
	⑧ 교통비 감면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3	0	6
	⑨ 폐기물 관리 수수료 및 과태료 감면	2	1	1	0	0	0	2	0	5	0	0	0	0	0	0	1	1	13
소계	45	102	59	77	12	12	17	13	30	4	14	43	61	45	27	65	35	661	
현금 지원	⑩ 출산 및 보육 지원	2	14	5	6	1	3	1	4	14	0	3	2	11	8	0	1	0	75
	⑪ 장애인 생활 지원 등	4	7	2	4	1	0	1	0	6	0	1	1	6	6	1	1	0	41
소계	6	21	7	10	2	3	2	4	20	0	4	3	17	14	1	2	0	116	
편의·고용·기타	⑫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	8	1	9	0	1	0	1	1	1	0	0	10	3	0	1	4	43
	⑬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1	1	0	2	2	1	2	1	2	0	1	1	4	1	1	1	0	21
	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및 장애인고용 등	5	8	7	6	7	4	7	2	15	1	3	3	7	8	1	5	4	93
	⑮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11	19	16	8	7	2	2	2	22	2	1	10	12	13	1	2	7	137
소계	20	36	24	25	16	8	11	6	40	4	5	14	33	25	3	9	15	294	
합계 (1,071건)	71	159	90	112	30	23	30	23	90	8	23	60	111	84	31	76	50	1,071	
100(%)	6.63	14.84	8.4	10.46	2.8	2.15	2.8	2.15	8.4	0.75	2.15	5.6	10.36	7.84	2.9	7.1	4.67	100	

하였고, 현금지원 중심 예외 조례가 38건(8.9%), 나머지 편의 및 고용·기타가 154건(3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에 앞서, 감면뿐만 아니라 예외 조례의 36%를 차지하는 기타 조례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장애등급을 대신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외 조례의 15.19%가 경기에서 제정되었으며 그다음으로 강원 11.45%, 전남이 10.98%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과 같이 간접적 예외 조례는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중심의 예외 조례는 강원과 서울이 1, 2위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감면 중심의 조례가 많은 지자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예외 조례에 있어 조례 제정의 중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간접적인 감면 및 할인보다 직접 지원에 해당하는 현금지원 예외 조례의 경우 중·경증으로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자체의 예산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유입될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안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현황 분석을 통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조례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기준[21]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 243곳 중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198곳이며 광역과 기초를 포함 총 215개 지자체의 해당 조례 1,071건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예외 조례 구성 예시(감면 등)

1)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 장애4급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1,2급)과 보호자/ 장애1-3급 또는 장애1-4급(차등할인)/ 중증장애인(1-2급)과 동행자, 3급, 상이군경/ 등록장애인, 상이1급, 활동보조자/ 등록장애인, 상이1급, 활동보조자, 부상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1급, 5·18민주부상자1급과 활동보조자/ 장애1-3급(시각4급), 상이1-4급과 보조자/ 장애1,2급과 보조자, 상이1급과 보조자/ 장애1-4급, 상이1-7급/ 차상위로서 장애1-2급/ 장애1-3급, 중북장애

표 5. 지자체별 예외 조례 현황

대분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
감면 ¹⁾ 등	1	5	1	3	0	0	1	0	3	0	0	9	0	2	0	5	1	31(7.24)
	19	33	18	24	1	2	1	2	1	1	2	3	23	16	1	16	12	175(40.89)
	1	0	0	3	0	0	0	0	0	0	0	0	1	0	0	4	1	10(2.34)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0.47)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2(0.47)
	1	4	1	0	0	0	0	0	0	0	0	0	2	0	0	0	0	8(1.87)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0.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0.23)
	2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4(0.93)
소계	25	44	21	30	1	2	3	2	4	1	2	12	27	18	2	26	16	236
현금지원	5	0	3	0	1	1	0	3	6	0	3	1	0	2	0	0	0	25(5.84)
	3	2	1	0	0	0	1	0	1	0	0	1	1	3	0	0	0	13(3.04)
소계	8	2	4	0	1	1	1	3	7	0	3	2	1	5	0	0	0	38
편의·고용·기타	2	3	1	5	0	1	0	1	1	1	0	0	7	2	0	0	2	26(5.84)
	1	0	0	0	1	0	1	1	0	0	0	0	1	0	0	0	0	5(1.17)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0.70)
	11	16	4	8	7	2	2	2	22	2	1	10	11	12	1	2	7	120(28.04)
소계	16	19	5	13	8	3	3	4	23	3	1	10	19	14	1	2	10	154
합계(1,071건)	49	65	30	43	10	6	7	9	34	4	6	24	47	37	3	28	26	428(100%)
100(%)	11.45	15.19	7.01	10.05	2.34	1.40	1.64	2.10	7.94	0.93	1.40	5.61	10.98	8.64	0.70	6.54	6.07	100

첫째, 2018년 4월 기준 215개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71건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지자체의 88.5% 정도로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체 243개 중 28곳(11.5%)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1-3급)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전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에 한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개념과 적격기준을 의학적 기준이나 장애정도 보다는 각 사업이나 서비스별 목적에 부합되도록 새롭게 개념이 정의되어야 하고, 적격기준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이나 서비스별 대상자 적격기준은 각 사업이나 서비스에 부합되도록 대상자 기준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혼자 이동함에 있어서 현저히 불가능한 자,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 자격기준은 장애 1.2등급이 아닌 독립보행이 어려운 자, 이동 시 보조자가 동반하기 힘든 자 등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사업 또는 서비스별 적용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대한 내용을 조례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일괄조례 개정 시, 중증장애인으로만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각 사업별 목적에 맞도록 적용대상에 대한 개념정의 내용을 조례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급 중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2급 이상
 2)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각4급(시각4급 외 장애1-3급의 경우 상위법에서 감면)
 3)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등록장애인+상이1-7급/ 등록장애인, 상이1-6급
 4) 제증명 등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장애1-3급(시각4급)
 5)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면 및 기타: 장애1-2급, 기초수급자로서 장애1급
 6) 수도요금 감면: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장애3급(시각4급이상), 상이5급이상/ 중증장애인(1-3급), 세대주와 그 가족이 장애3-6급/ 장애1-2급 / 장애1-4급/ 세대구성원 중 3급이상(시각4급이상), 상이5급이상
 7)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장애1-2급, 5·18민주유공자(1-14급)/ 장애1-2급/ 장애1-2급, 단 치석제거는 장애1-2급
 8) 교통비 감면: 장애1급 및 신장·시각장애인
 9) 폐기물 관리 수수료 및 과태료 감면: 장애1,2급/ 장애1,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둘째, 215개 지자체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등급 관련조례가 1,071건으로, 이 중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나 일괄 조례가 예외 조례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표 5] 지자체별 예외 조례 현황례개정이 필요한 예외 조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련 조례 중 일괄 조례인 전체 등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급-3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일괄 조례 중 서비스 제공기준을 경증장애인(4-6급)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사업은 없었다. 이는 현재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경증장애인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시, 경증장애인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면할인서비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1,071건 중 감면할인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61건(61.7%),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가 294건(27.5%), 116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 중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현금급여 관련 조례는 전체 사업 중 10.8%의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되는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소득보장형태의 사업인 감면할인제도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감면할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최종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자체 장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기준은 소득기준과 등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

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감면할인서비스도 서비스별 목적에 맞도록 적용대상과 적격기준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적용 시 기존의 사업 대상자에 한정시켜서 서비스 적격기준만 개정하는 차원이 아닌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신규 서비스 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인 복지를 늘여나 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직접급여보다 간접급여에 치중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시, 직접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제공기준인 장애등급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적용기준들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 사항에 대해서 세부 기준(각주1참조)을 살펴보면, 장애1-3급(시각4급)이거나 상이1-4급과 활동보조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장애등급 1-4급이거나 상이1-7등급인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요금감면의 경우도 장애1-2급, 장애1-4급, 세대구성원 중 3급 이상(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자, 교통비 감면의 경우, 장애 1급, 1급 신장 장애이거나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²⁾에 의거하면, 서비스 제공기준이 1-2급, 1급 또는 2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상이등급 1-2급, 2급이거나 상이등급 1-3급 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현금 급여의 경우, 출산 및 보육지원의 등급적용기준은 부1-3급/4-5급, 부모1-2급/3-4급, 모1-2급/3-4급/5-6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2 예외 조례 등급기준 구성 예시(편의 및 고용)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2급/ 1급 또는 2급/ 1급 또는 2급 또는 상이등급1-2급/1급 또는 2급 및 3급 일부 / 1-3급, 상이등급1-3급, 1-2급(無심사 신청)/ 3급이상, 상이등급1-3급/ 1-3급 일부, 상이등급1-3급/ 상이등급1-3급,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및 3급 일부
- 2)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1-3급 및 1급 또는 2급(임기제공무원으로 보조인력채용가능)/ 1-5급 및 1-4급(임기제공무원으로 보조인력채용가능)/ 1-3급 및 1급(임기제공무원으로 보조인력채용가능)/ 1-5급
- 3)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및 장애인고용: 1-2급(배우자, 자녀 장애인) 및 1-3급(본인)/ 1-3급 및 자체1-4급

같이 예외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중증장애인(1급, 1-2급),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1-4급, 1-5급)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이 예상되는 바,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외 조례의 경우,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행 유지 또는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를 염두고 둔 새로운 기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 또는 서비스별 목적에 부합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을 반영해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로 대체하게 될 경우,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에 한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http://www.law.go.kr/lawBodyCompareInfoP.do?lsNm>, 2018.8.5.

[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2018.8.5>.

[3]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 정책 세미나, 2013.

[4] 김성희,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변소현, 이석영, 이민경,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5]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이병화, 최미영, 박희찬, 나운환, 김종인, 이선우, 변경희, 김언아, 권선진, 조미현, 이승기, 김용득, 권오형, 김경란,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I)*,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6] 조한진,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재활복지*, 제15권, pp.1-26, 2011.

[7] 신옥주,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pp.1-35, 2016.

[8]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565>, 2018.6.18.

[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87&lsId=&efYd=2019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2018.3.22.

[10] 김용득,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제6권, 제2호, pp.1-28, 2016.

[11] 이승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이용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고찰-장애등급제 폐지 및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pp.327-347, 2014.

[12]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3호, pp.149-168, 2015.

[13]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오민애, 차선화, *장애인 감면할인 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14] 정종화, 이경준,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5권, 제2호, pp.275-304, 2011.

[15] 정미나, 임영식, “[미래청소년학회지]의 연구동향: 내용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4권, pp.93-110, 2017.

[16]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pp.127-155, 2016.

[17] 나태준,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3호, pp.207-231, 2005.

[18]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189-199, 2014.

- [19] 박주영,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732-745, 2016.
- [20] 변민수,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료, pp.53-80, 2017.
- [21] [https://www.laiis.go.kr/pegasusIndex.do?athena.pegasus.menuid=AHlbAAAARJ9ZZwBF\\$\\$__system&inq_yr=2017&AgsSelPos=left&AgsSelCont=AHlbAAAARJ2WORgBC\\$\\$__system&inq_yr=2017&AgsSelPosRoot=MiddleTopMenu_Lips&dynamic=false&fromtop=true&menuIdToBeExtended](https://www.laiis.go.kr/pegasusIndex.do?athena.pegasus.menuid=AHlbAAAARJ9ZZwBF$$__system&inq_yr=2017&AgsSelPos=left&AgsSelCont=AHlbAAAARJ2WORgBC$$__system&inq_yr=2017&AgsSelPosRoot=MiddleTopMenu_Lips&dynamic=false&fromtop=true&menuIdToBeExtended), 2018.6.1.

저 자 소 개

김 경 란(Kyoung-Ra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7월 ~ 2016년 1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2팀 팀장)
 - 2016년 2월 ~ 현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등급제 개편 TF 팀장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사례관리

윤 선 예(Sun-Yae Yoon)

정회원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1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연구원
- <관심분야> : 장애인고용, 복지전달체계, 증거기반행정